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46
------------	-------

발의연월일 : 2025. 12. 26.

발의자 : 손명수 · 황명선 · 문진석

김태선 · 이성윤 · 박지원

남인순 · 최혁진 · 김영배

문정복 · 홍기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및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령에 ‘임산부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유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설치 의무가 불분명하여 수유실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임. 최근 지하철 이용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돌봄권 보장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내 수유실 등 기본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돌봄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에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휴게시설의 용도 및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설비를 마련할 것
3.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적절한 물품을 구비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p> <p>① (생 략) <u><신 설></u></p>	<p>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도시철도법」 제26조에 <u>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u> <u>를 받은 자 및 「철도사업법」</u> <u>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u> <u>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안</u> <u>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u> <u>도록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u> <u>설에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u> <u>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u> <u>우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기준</u> <u>·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u> <u>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u> <u>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u></p> <p>1. 휴게시설의 용도 및 이용인 <u>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u> <u>확보할 것</u></p> <p>2.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및 안 <u>전을 위한 설비를 마련할 것</u></p> <p>3.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적절 <u>한 물품을 구비할 것</u></p> <p>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p>
<p>② · ③ (생 략)</p>	